

제 1212 호  
1985.11.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업무관  
편집인 : 공보관 이광우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제	보도국장	공보국장	공보관	공보
				공보

# 시보

## 차례

- ◎ 교육위원회훈령  
제 75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보안업무시행내규증개정내규 ..... 3
- ◎ 고 시  
제 743 호 : 봉천제 2 구역제 1 지구주택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 16  
제 744 호 : 을지로 2 가제 16, 17 지구관리처분계획인가 ..... 16  
제 745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30  
제 74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30  
제 747 호 : 도시계획시설 (하천) 결정 ..... 31

< 이 면 계 속 >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815

제 748 호 : 도시계획시설 ( 시장 ) 변경결정 ..... 31  
제 749 호 : 다동계 12 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 32

◎ 공 고

○ 제 655 호 : 은평구진관내외동정비공사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 35

◎ 사 령

**교육위원회훈령**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보안업무 시행내규중 개정내규를 이에 공포한다.

1985.11.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최 열 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훈령제 75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보안업무  
시행내규중개정내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보안업무 시행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2 항중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다”를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로 하고 동조 제 4 항 제 2 호중 “교육구청, 사업소 및 고등학교”를 “교육구청 및 사업소”로 하며, 동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각급 학교는 학교장

제 4 조 제 1 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소위원회의 구성은 별표 3 과 같다.(단, 4 급공무원 이하를 기관장으로 하는 기관 제외)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5 인이상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동조 제 8 항중 “의결”을 “결정”으로 하고, 동항 제 5 호항 “보안위반자”를 “보안위규자”로 한다.

제 6 조 제 5 호중 “법인 및 사설강습소의 일직원”을 “법인과 단체의 일직원 및 사설강습소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 6 조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또는 인가예정기관의 인사담당부서

2. 제 6 조 제 3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권자

3. 제 6 조 제 4 호 및 제 5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1 차 감독기관의 주관과 동조 제 2 항 제 1 호중 “연명부”

를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1 부”로 하고, 동항 제 2 호중 “신원전술서 3 부”를 “신원전술서 4 부”로 하며, 동항 제 3 호중 “호적등본 2 부”를 “호적등본 1 부”로 한다.

제 10 조 제 1 항 및 제 11 조를 삭제한다.

제 12 조 제목 “임시직원의 관리”를 “임시직원 및 사설강습소의 직원관리”로 하고 동조에 제 8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시설강습소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는 직원채용시 채용예정자의 신원증명서 징구, 기타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 14조 제 1항 제 1호 가목중 “4급”을 “과장급”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각과장 및 관리제장”을 “과장급이상 및 서무제장”으로 한다.

동조 제 2항 제 1호중 “4급”을 “과장급”으로 하고, 동항 제 2호중 “사업소장”을 “교육구청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며, 동조 제 4항을 삭제한다.

제 15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중 “관리제”를 “서무제”로 하고, “소속기관 전부서”를 “관련부서”로 하며, 동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비상훈련(울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기간중 동원되는 비밀취급 비인가자에 대하여는 사전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인가에 대신하여 서약집행한 후 훈련기간중 동원할 수 있다.

제 19조에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비밀취급인가중의 재발급시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 22조 제 1항 제 3호중 “제 13호 서식”을 “제 2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학사제”를

“교직제”로, “학무과 초등제 또는 중등제”를 “학무과 학사제”로 “소속기관 전부서”를 “관련부서”로 한다.

제 23조 제 1항중 “매분기마다 1회이상”을 “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 27조제 제 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28조 제 12항 및 제 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⑳접수비밀 및 자체생산비밀을 그 예고문에 의한 파기일자 경과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 18호의 2서식의 비밀계속보관 승인 신청서에 의하여 발행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체생산 비밀인 경우에는 보호기간 도래전에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내부결재)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문서는 비밀의 유효본과 통합 보관한다.

㉑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도래된 비밀을 계속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검토필 표시를 하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토필 : 19 . . . . .  
 계속보관승인자 :  
 직 성명 (인)

2. 원 예고문은 대각선 주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하며 비밀관리부의 처리담당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제 35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접수기관의 접수자는 즉시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당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영수증 부분만을 절취하여 즉시 발송기관에 발송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이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 39 조 제목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를 “비밀의 인계인수”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인계인수”로 하며, 비밀인계인수의 다음의

급 비밀 전  
 급 비밀 전 을  
 급 비밀 전 으로 한다.  
 계 전

제 41 조 제 2 항중 “누년일련번호”를 “비밀의 등급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로 한다.

제 42 조 제 1 항 제 1 호중 신대장

으로 이기하였을 다음의  
 “ 급 비밀 전  
 급 비밀 전 을  
 급 비밀 전 ”으로 한다.  
 계 전

동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이기조치되는 비밀에 대하여는 구대장의 관리번호 순으로 1 번부터 시작하는 관리번호를 다시 부여하되 구대장에 의한 관리번호는 대각선 주선으로 삭제한후 비밀의 여백에 내규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으로 관리번호 표시를 하고 신대장에 의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과 같이 이기한 내용을 기재한다.

구대장에서 이기하였음.

급 비밀 전  
 19 년 월 일  
 이기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제 50 조 제 2 항중 “분기말”을 “매년 6 월 30 일과 12 월 31 일을 기준하여”로 하고, 동항 “표”의 보고 기일난중 “익월 3 일”을 “작성기준일로 부터 3 일 이내”로 “익월 5 일”을 “작성기준일로 부터 5 일 이내”로 “익월 8 일”을 “작성기준일로 부터 8 일 이내”로 한다.

제 52 조 제 2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한구역

교육감실, 소속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보이실, 통신실(T.T실) 비상계획관실, 등사실, 전자계산실, 모사전송실

제 54 조 제 1 항 제 2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교환실, 보이실, 통신실, 등사실, 전자계산실, 모사전송실의 관리를 담당하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

제 57 조 다음에 제 57 조의 2, 제 57 조의 3 및 제 57 조의 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7 조의 2 ( 모사전송기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 모사전송하고자 할 때에는 모사전송기 사용신청서 ( 별지 제 47 호 서식 ) 를 작성하여 문서통제관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 57 조의 3 ( 무선통신망관리 )

①무선통신망을 신·증설할 때에는 별지 제 48 호 서식에 의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 보관하고, 사본 1 부를 당해 감독기관을 거쳐 본청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력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즉시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무선통신장비는 각급 기관장의 경을 받아 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관리 운용한다.

③무선통신망을 사용하여 송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장비관리기록부 ( 별지 제 49 호 서식 ) 를 비치하여 매월 1 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무선통신장비가 도난, 손실, 망실 및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보안담당관에게 우선 전화로 보고한후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경위
4. 장비명칭
5. 처리결과
6.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제 57 조의 4 ( 국제, 시외전화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 국제통화를 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거쳐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를, 시외통화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하며, 국제·시외통화 통제부 ( 별지 제 46 호 서식 ) 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1 조 제 3 항중 “문교부 자체 감사 규정 (74.2.20 문교부훈령 제 258 호)” 을 “문교부행정감사 규정 (문교부훈령 제 385 호)” 으로 한다. ( 별지제 1 호서식 ) 과 ( 별지제 2 호서식 )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제 4 호서식 ) 과 ( 별지제 13 호서

식)을 삭제한다.  
 (별지제 18호의 2서식)과 (별지제 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 46호서식) 다음에 (별지제 47호서식), (별지제 48호서식), (별지제 4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사업소보안심사위원회구성

- 위원장 : 기관장
- 부위원장 : 서무과장
- 위원 : 소속직원중에서 기관장이 임명
- 간사 : 서무과 보안업무 주무자
- 서기 : 서무과 보안업무 실무자

별표 4 (중전의 별표 3) 보안업무착안 사항의

(별지 제 1호 서식)

신원조사 의뢰자명단

요청기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및직급	조사목적	본적 및 주소	비고
					본적 :	
					주소 :	

1. 보안제도 및 운영

나. 보안담당관

(1)항목중 “보안담당관”을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인원보안

가의 제목 “신원조사 및 신원동향파악”을 “신원조사 및 신원조사회보서관리”로 하고

(3)항목 및 (4)항목을 삭제한다.

5. 통신보안중 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모사전송기 및 통신장비 사용 통제

(1)비밀내용을 모사전송기로 전송한 사실은 없는가?

(2)국제 및 시외전화 통화시 사전 통제를 받고 있는가?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 2호서식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신 원 진 술 서											
주의: 본 진술서를 기입전에 아래 서약란을 읽을것. 반드시 잉크를 사용하되 한글로 자필할 것이며 기입후 누락여부를 재확인 할것											
① 주민등록 번호	② 성명		한글 한자 ( )	③ 생년 월일	④ 성명	⑤ 호주와 의과계		의			
⑥ 본 적				⑧ 전 주 소							
⑦ 원 적				⑨ 원 주 소	( 통 반 )						
⑩ 직 장 및 직장소재지				⑪ 전화번호	직장		가정				
최근 5년내 조사필한 사실유무		신원 의뢰 관서			의뢰 일자			사 유			
⑫ 본 관	⑬ 종교				⑭ 혈액형			⑮ 신장	cm		
⑯ 체 중	kg	⑰ 외국어	상(어) 중(어) 하(어)	⑱ 본인재산		동산	부동산				
⑲ 친권자재산내	⑳ 특 기				㉑ 취 미						
정 당 및 사 회 단 체 관 계											
㉒ 가입일자				㉓ 가입동기							
㉔ 단체명				㉕ 직 체							
㉖ 사퇴일자				㉗ 사퇴이유							
병역 관계	㉘ 군 별	㉙ 최종부대명	㉚ 병 과	㉛ 최종계급	㉜ 군 번	㉝ 입대 및 제대일자	㉞ 제대구분	㉟ 미필사유			
학 력	㊱ 학 교 명		㊲ 기간(부터~까지)		㊳ 전공 과 목		㊴ 학 위	㊵ 소 제 지			
			. . ~ . .								
			. . ~ . .								
			. . ~ . .								
경 력	㊶ 기관또는업체명		㊷ 기간(부터~까지)		㊸ 직 책 및 급 수		㊹ 상 별 및 훈 장				
			. . ~ . .								
			. . ~ . .								
			. . ~ . .								





(별지제 18호의 2서식)

비밀계속보관승인신청서

서무:

수신:

관리 번호	발행처	발행일자	제 목	예고문	변경예고문	변경이유

위와같이 비밀을 계속 보관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제 46 호서식)		국 제 외 통 화 통 제 부		보안담당관		결	
시		과				재	
전	제	과	장	계	장	계	
수		신		처		수신자직성명	
통		화		내		용	
음		어		화		여부	
				음어. 일상어. 기타			
통		화		시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분간 )	
통		화		자		성	
명							
통		화		내		용	
				제		목 :	
				내		용 :	
비		고					

(별지제 47호서식)  
(정보자료 송신용)

모 사 전 송 기 사 용 신 청 서

1. 구하고자 하는 자료내용

2. 자료의 사용목적

3. 송신문안: 별첨

위와 같이 모사전송기를 사용코자 요청합니다.

198

과 장

㉠

통	계

(별지 제 48 호 서식) (전면)		비밀장비이력카드(장비, 건물)	
관리번호			
장비종류 고유번호		제작회사명	
기기행명		보관장장	
교부년월일	일	제작년월일	년월일
내용년수	수	주파수번호	년월일
통신방식	식	수용회선량	년월일
소요진력	력	출력	년월일
변조및진파방식	식	용도	년월일
사용공중선	선	크기	년월일
형식또는방식용량	량	설치년월일	년월일
사용판서	서		년월일
판니책임자	자		년월일
기재이력	력	이력내용	이력내용
사항	항	비고	비고

(별지제 48 호서식) (이면)						
기 기 보 수 사 항	관 련 문 서 번 호	년 월 일	변 동 사 항 (수리내역)	보 수 금 액	보 수 업 체 명	비 고
참 고 사 항						

관리 번호		장비종류및 고유번호	수		장비 명칭	사본 번호	예고문 제	관리 책임자	보관 장고	재분류참조								
			년월일	발신수신						과기	과기	근거	영수증	수령 자 <sup>①</sup>				

(별지 제 49 호 서식) 비밀장비관리기록부

보관책임자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743 호

봉천제 2 구역제 1 지구주택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제 634 호 (84.8.21) 로 사업시행인가된 봉천제 2 구역 지구주택개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기 동법제 41 조제 5 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5. 11. 1.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의 명칭 : 봉천제 2 구역 1 지구 주택개발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및 면적
  - 가.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산 98-5 번지 일대
  - 나. 면적 : 10,291 평방미터
- 3. 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소소재지
  - 가. 명칭 : 주식회사 일두
  -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 4 동 254-6 번지 [주] 일두건설 유 수 건
- 4.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내역

가. 토지 : 10,291 평방미터

- 택 지 : 9,069 \*
- 도 로 : 1,222 \*

나. 건축시설

- 동수 : 아파트 6 층 5 동 204 가구  
상가 1 동 ( 지하 1 층 , 지상 4 층 )
- 연면적 : 14,394.95 평방미터
- 5. 분양대상자별 주소, 성명 : 별첨 (생략)
- 6.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 별첨 (생략)
- 7.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44 호

을지로 2 가 제 16,17 지구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제 471 호 (83.9.12)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한 을지로 2 가 제 16,17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41 조, 제 1 항 및 동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



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동법 제 41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11.1.

서울특별시

가. 사업의 명칭 : 을지로 2가제 16,17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을지로 2가 32-3 번지

일대 ( 264 필지 )

다. 시행면적 : 27,99.2 ㎡

라. 시행자의 주소, 성명

1) 주 소 : 강남구 논현동 254 번지

2)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 장 권 영 각

마. 사업시행기간 : 83.9.12-87.9.30

바.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1) 대 지 : 22,085.8 ㎡

2) 건축시설 : 219,308.47 ㎡

가) 층수 : 29/4, 27/4, 20/5

나) 용도 : 업무, 판매, 근린생활시설  
사. 분양설계 ( 별첨 : 생략 )

아. 분양대상자의 주소, 성명 ( 별첨 : 생략 )

자.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물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 별첨 1

( 종전토지 및 건물의 명세와 가격은 생략 )

차.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별첨 : 생략 )

카.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별첨 : 생략 )

타. 법제 43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격 및 처분방법 ( 별첨 : 생략 )

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별첨 : 생략 )

하. 참여조합원이 취득하게 될 대지와 건축시설의 명세 및 참여조합원의 주소, 성명 : 해당사항 없음.

37-18 제 1212 호 시 보 1985.11.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의 명세와 추산액

연 번	분 양 대상자 성 명	구 분	대 지			건 축	
			지번및면적	지 분 율	추산액	구획번호	용 도
1	박대규	토지등가격	수하동 "가"	198.40 /	51,357.461	208-2	판매시설
			1,096.0 m <sup>2</sup>	152,267.05			
				180.82 / "	46,806.733	-7	"
			장교동 "나"	40.81 / "	10,642.334	-8	"
			14,311.5 m <sup>2</sup>	40.132 / "	10,591,311	16B <sub>1</sub> -38	"
2	최문길	토지등가격	울지로 2가	460.162 / "	119,397.839	계	
			"다" 15.3 m <sup>2</sup>	29.981 / "	7,760.826	16B <sub>1</sub> -7	판매시설
			계	92.140 / "	24,159.447	-44	"
			122.121 / "	31,920,273	계		
			15,422.8 m <sup>2</sup>				
3	이용덕	토지등가격 및 비용부담	장교동 "라"	159.32 /	50,352.851	17B <sub>1</sub> -10	판매시설
			100.2 m <sup>2</sup>	67,041.42			
			울지로 2가	6,562.8 m <sup>2</sup>	계 6,663 m <sup>2</sup>		
			수하동 "가"	306.93 /	79,451,336	212-3	사무실
			1,096.0 m <sup>2</sup>	152,267.05			
				134.67 / "	34,860.430	-4	"
			장교동 "나"	89.33 / "	23,167.413	208-5	판매시설
			14,311.5 m <sup>2</sup>	329.33 / "	86,914,095	-10	"
			울지로 2가 "다"	236.14 / "	62,320,149	207-10	"
			15.3 m <sup>2</sup>	29.981 / "	7,912.342	16B <sub>1</sub> -5	"
4	연무웅	토지등가격 및 비용부담	수하동 "가"	113.23 / "	29,310,510	207-11	"
			1,096.0 m <sup>2</sup>	29.981 / "	7,760.827	16B <sub>1</sub> -6	"
			계	1,349,499 / "	361,815,666	계	
				31.899 / "	8,418,525	-32	"
				31.899 / "		-41	"

시			설			계		청 산 금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추산액	추산액	지 수	정 수		교 부			
						지 수	금 액	기수	금액		
69.66	128.74	198.40	96,356,525	147,713,986	4,226.541						
63.48	117.34	180.82	85,269,006	132,075,739	3,778.906						
14.33	26.48	40.31	20,518,297	31,200,631	866.271						
12.248	27.894	40.132	24,344,671	34,935,982	925.264						
159.718	300.444	460.162	226,528,499	345,926,338	9,796.781	1,254.352	47,361,638				
9.150	20.831	29.981	16,421,940	24,182,766	691.909						
28.12	64.020	92.140	72,363,373	96,522,820	2,622.258						
37.27	84.851	122.121	88,785,313	120,705,586	3,314.167						
59.54	99.78	159.32	66,332,967	116,685,818	2,590.822						
149.10	157.83	306.93	110,049,854	189,501,170	5,421.941						
65.43	69.24	134.67	46,148,461	81,008,891	2,317.798						
31.36	57.97	89.33	43,604,993	66,772,406	1,895.761						
115.62	213.71	329.33	168,087,564	235,001,659	6,753.606						
77.88	158.26	236.14	116,103,337	178,423,485	4,725.467						
9.150	20.831	29.981	18,212,656	26,124,998	691.909						
9.735	22.164	31.899	22,670,460	31,088,985	823.378						
"	"	"	19,067,751	27,476,276	727.697						
527.35	821.949	1,349.499	610,281,023	972,083,689	25,948.379						
37.35	75.88	113.23	49,897,023	79,207,533	2,266.258						
9.150	20.831	29.981	16,421,949	24,182,776	691.909						

연 번	분 양 대상자 성 명	구 분	대 지			건 축		
			지번및면적	지분율	추산액	구획번호	용도	
5	강수현	토지등가격 및비용부담	장교동 "나" 14,311.5㎡	16.253/	4,284,978	-13	판매시설	
			울지로 2 가 "다" 15.3㎡	22.020/ 152,267.05	5,811,339	-14	"	
				16.252/	4,289,096	-19	"	
			계 15,422.8㎡	76.676/	20,235,706	-147	"	
			계	274.412/	71,692,456	계	"	
			토지등가격 및비용부담	장교동 "라" 100.2㎡	104.83/ 67,041.42	33,131,367	17 B <sub>1</sub> -7	"
			울지로 2 가 "마" 6,562.8㎡	계 6,663㎡				
			수하동 "가" 1,096.0㎡	16.252/ 152,267.05	4,206,963	16 B <sub>1</sub> -16	"	
			장교동 "나" 14,311.5㎡	99.741/	25,818,773	-28	"	
			울지로 2 가 15.3㎡	92.14/	24,012,167	-35	"	
	계 15,422.8㎡	274.827/	72,530,107	-146	"			
	계	587.79/ 219,308.47	159,699,377	계	"			
6	김중진	토지등가격	수하동 "가" 1,096.0㎡	170.020/ 152,267.05	44,011,066	16 B <sub>1</sub> -63	"	
			장교동 "나" 14,311.5㎡	75.444/	19,529,296	-81	"	
				498.014/	128,914,991	-82	"	
			울지로 2 가 "다" 15.3㎡	74.608/	19,312,890	-91	"	
			계 15,422.8㎡	70.923/	18,527,735	-110	"	
	계	889.004/	230,295,978	계	"			
7	박영래	토지등가격 및비용부담		302.46/	78,294,241	219-1	사무실	
				306.93/	79,528,962	-2	"	

시 설			계			상 산 금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추산액	추산액	지 수	정 수		교 부	
						지 수	금 액	지 수	금액
4,960	11,293	16,253	8,805,823	13,090,801	348,085				
6,720	15,300	22,020	14,738,221	20,549,560	544,346				
4,960	11,292	16,252	9,780,725	14,069,822	372,633				
23,400	53,276	76,676	54,733,907	74,969,613	1,985,537				
86.54	187,872	274,412	154,377,549	226,070,105	6,208,668				
39.18	65.65	104.83	45,339,900	78,471,267	1,742,329				
4.96	11,292	16,252	7,890,100	12,097,063	346,117				
30.44	69,301	99,741	69,505,669	95,328,442	2,727,504				
28.12	64.02	92.14	73,273,054	97,285,221	2,708,295				
83.875	190,952	274,827	177,298,500	249,828,607	6,616,600				
186.575	401,215	587.79	373,311,223	533,010,600	14,140,545				
51.888	118,132	170,020	102,280,153	146,291,219	4,186,633				
23,025	52,419	75,444	48,271,794	67,801,090	1,939,901				
151,989	364,025	498,014	289,771,747	418,686,738	11,979,318				
22,770	51,838	74,608	45,693,080	65,005,970	1,839,928				
21,645	49,278	70,923	48,779,832	67,307,567	1,850,619				
271,317	617,692	889,009	534,796,606	765,092,584	21,820,399	873,585	32,984,694		
146.93	155.53	302.46	109,337,935	187,632,176	5,368,466				
149.10	157.83	306.93	111,639,700	191,168,662	5,447,753				

연 번	분 양 대상자 성 명	구 분	대 지			건 축	
			지번및면적	지 분 율	추산액	구획번호	용 도
8	조규동	토지등가격 및비용부담	수하동 "가" 1,096.0㎡	306.93 /	81,002,470	-3	사무실
				152,267.05			
				306.89 /	80,991,914	-6	"
				"			
				1,223.21 /	319,817,587	계	
				103,465 /	26,782,760	16 B <sub>1</sub> -11	판매시설
				88,453 /	22,896,781	-36	"
9	한상은	토지등가격 및비용부담	장교동 "나" 14,311.5㎡ 을지로 2가 "다" 15.3㎡ 계 15,422.8㎡	40,132 /	10,388,496	-37	"
				"			
				62,437 /	16,352,499	-46	"
				"			
				294,487 /	76,420,536		
				152,267.05			
				3,053.88 /	794,269,503	102-1	금융업소
10	성기	토지등가격 및비용부담	계	736.80 /	194,450,265	101-2	"
				"			
				3,790.68 /	988,719,768		
				"			
				119.28 /	30,876,602	224-5	오피스텔
				302.46 /	78,294,241	218-1	사무실
				"			
306.93 /	79,451,338	-2	"				
306.93 /	79,451,338	-3	"				
134.67 /	34,860,429	-4	"				
143.22 /	37,073,666	218-6-2	"				
302.46 /	78,294,241	-7	"				
988,246 /	260,718,265	16 B <sub>1</sub> -1	판매시설				
386.711 /	102,057,623	-2	"				

시			실			계			청 산 금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추산액	추산액	지 수	정 수		교 부				
						지 수	금 액	지수	금액			
149.10	157.83	306.93	124,692,985	205,695,455	5,447,753							
149.10	157.79	306.89	122,563,500	203,555,414	5,391,075							
594.23	628.98	1,223.21	468,234,120	788,051,707	21,655,047							
31,577	71,888	103,465	59,579,025	96,361,785	2,470,953							
26,996	61,458	88,453	63,378,850	86,275,631	2,468,488							
12,248	27,884	40,882	23,690,910	43,079,406	975,068							
19,055	43,382	62,437	39,607,413	55,959,912	1,527,182							
89,875	204,612	294,487	186,256,198	262,676,734	7,441,691	920.424	34,753,234					
1,777.28	1,276.60	3,053.88	3,032,091,312	3,826,960,821	107,401,030							
46.50	290.30	736.80	1,562,160,837	1,756,611,102	46,523,067							
2,223.78	1,566.90	3,790.68	4,594,852,155	5,833,571,923	153,924,097							
62.51	56.77	119.28	60,081,420	90,958,022	2,602,459							
146.03	155.53	302.46	111,158,731	189,452,972	5,420,562							
149.10	157.83	306.93	112,799,658	192,250,996	5,500,618							
149.10	157.83	306.93	112,799,658	192,250,996	5,500,618							
66.43	69.24	134.67	47,298,135	82,158,564	2,350,692							
69.58	73.64	143.22	51,706,885	88,780,551	2,540,158							
146.93	155.53	302.46	109,180,972	187,475,213	5,363,975							
301,601	686,645	988,246	608,316,216	869,034,481	23,047,413							
118,020	268,691	386,711	233,055,957	335,113,590	8,875,335							

연 번	분 양 대상자 성명	구 분	대 지			건 축	
			지번및면적	지 분 율	추산액	구획번호	용 도
11	대 홍 창 업	토지등가액 및비용부담	계	58.506/ 152,257.05	15,440.428	-20	판매시설
				3,049.413/ "	796,518.171	계	
			수하동 "카" 1,096.0 m <sup>2</sup>	302.46/ 152,267.05	78,294.241	214-1	사무실
				306.93/ "	79,451.337	-2	"
			장교동 "나" 14,311.5 m <sup>2</sup>	306.93/ "	79,451.337	-3	"
			을지로 2가 "다" 15.3 m <sup>2</sup>	134.67/ "	34,860.430	-4	"
				302.46/ "	78,294.241	-5	"
			계 15,422.8 m <sup>2</sup>	306.89/ "	79,440.983	-6	"
				302.46/ "	79,117.692	-7	"
				302.46/ "	79,822,784	213-1	"
				306.93/ "	81,002,470	-2	"
				306.93/ "	81,002,470	-3	"
				134.67/ "	35,541,011	-4	"
				302.46/ "	79,822,784	-5	"
				306.89/ "	80,991,913	-6	"
				302.46/ "	79,822,784	-7	"
				302.45/ "	79,822,784	212-5	"
				306.89/ "	80,991,913	-6	"
				302.46/ "	79,822,784	-7	"
			계	4,837.41/ "	1,267,553.958	계	"



시			계			청 산 금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추산액	추산액	지 수	징 수		교 부	
						지 수	금 액	지 수	금액
17,855	40,651	58,506	40,262,863	55,703,291	1,475,277				
1,227,056	1,822,357	1,049,413	1,486,600,565	2,263,178,676	62,677,107				
146.93	155.53	302.46	108,448,928	186,743,169	5,343,030				
149.10	157.83	306.93	110,049,835	189,501,172	5,421,941				
"	"	"	110,049,835	189,501,172	5,421,941				
65.43	69.24	134.67	46,148,462	81,008,892	2,317,798				
146.93	155.53	302.46	106,522,403	184,816,644	5,287,909				
149.10	157.79	306.89	108,105,216	187,546,199	5,366,006				
146.93	155.53	302.46	113,695,255	192,812,947	5,287,909				
"	"	"	121,918,555	201,741,339	5,343,030				
149.10	157.83	306.93	123,718,379	204,720,849	5,421,941				
"	"	"	123,718,379	204,720,849	5,421,941				
65.43	69.24	134.67	51,974,064	87,515,075	2,317,798				
146.93	155.53	302.46	119,837,304	199,660,088	5,287,909				
149.10	157.79	306.89	121,616,950	202,608,863	5,366,006				
146.93	155.53	302.46	119,837,304	199,660,088	5,287,909				
"	"	"	119,837,304	199,660,088	5,287,909				
149.10	157.79	306.89	121,616,950	202,608,863	5,366,006				
146.93	155.53	302.46	119,837,304	199,660,088	5,287,909				
2,350.0	2,487.41	1,837.41	1,546,932,427	3,114,486,385	84,834,892				

연 번	분 양 대상자 성 명	구 분	대 지			전 축	
			지번및면적	지 분 율	추 산 액	구 획 번호	용 도
12	한 진 우 홍	토지등가격	수하동 "가" 1,096.0 m <sup>2</sup>	307.36 / 152,267.05	79,562,646	210-1	사 무 실
				311.91 / "	80,740,451	-2	"
			장교동 "나" 14,311.5 m <sup>2</sup>	311.91 / "	80,740,451	-3	"
				136.86 / "	35,427,329	-4	"
			율기로 2가 "다" 15.3 m <sup>2</sup>	389.89 / "	100,926,211	-5	"
			계 15,422.8 m <sup>2</sup>	307.35 / "	80,820,704	-6	"
		계	1,762.28 / "	458,217,792	계		
13	정상례	토지등가격 및비용부담		16.252 / "	4,272,262	16 B <sub>1</sub> -22	관 내 시 설
14	양규환	"		22.020 / "	5,772,729	-15	"
15	양경희	"		16.253 / "	4,257,718	-12	"
16	이종익	"		16.252 / "	4,275,840	-18	"
17	대 상 홍 공	"		64.795 / "	16,772,715	16 B <sub>1</sub> -3	"
				69.835 / "	18,077,360	-4	"
				142.650 / "	36,926,117	-27	"
				92.140 / "	23,851,192	-45	"
				90.517 / "	23,723,063	-62	"
				459.937 / "	119,350,447	계	
18	홍영철	토지등가격 및비용부담	수하동 "가" 1,096.0 m <sup>2</sup>	302.46 / "	78,294,240	220-1	사 무 실
				306.93 / "	79,451,338	-2	
			장교동 "나" 14,311.5 m <sup>2</sup>	306.93 / "	79,451,338	-3	

시			계			총 산 금			
						정 수		교 부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추산액	추산액	지 수	지 수	금 액	지 수	금 액
146.93	160.43	307.36	111,550,556	191,113,202	5,468.064				
149.10	162.81	311.91	113,195,342	193,935,793	5,548.823				
"	"	"	113,195,342	193,935,793	5,548.823				
65.43	71.43	136.86	47,449,262	82,876,591	2,371.236				
186.38	203.51	389.89	138,960,479	239,886,690	6,863.554				
146.93	160.42	307.35	120,617,740	201,438,444	5,410.784				
843.87	921.41	1,765.28	614,968,721	1,103,186,513	31,211.284	4,391,516	165,814,213		
4.960	11.292	16.252	9,741,350	14,013,612	376.887				
6.720	15.300	22.020	14,246,752	20,019,481	544.246				
4.960	11.293	16.253	8,817,331	13,075,049	356.497				
4.960	11.292	16.252	9,949,882	14,225,722	330.971				
19.775	45.020	64.795	41,084,595	57,857,311	1,656.393				
21.313	48.522	69.835	42,392,244	60,469,604	1,730.135				
43.535	99.115	142.650	100,083,294	137,009,411	3,920.065				
28.120	64.020	92.140	69,514,346	93,355,538	2,671.342				
27.625	62.892	90.517	63,077,412	86,800,475	2,362.393				
140.368	319.569	459.937	316,151,892	435,502,339	12,339.328				
146.93	155.53	302.46	108,448,927	186,743,167	5,343.030				
149.10	157.83	306.93	110,049,832	189,501,170	5,421.941				
"	"	"	110,049,832	189,501,170	5,421.941				

연 번	분 양 대상자 성 명	구 분	대 지			건 축	
			지번및지적	지 분 율	추 산 액	구획번호	용 도
19 20	동 사 무 소 파출소  합 계	토지등가격 " " " 계 " " " 1,2 동획지 3 동 획 지	을지로 2 가 "다" 15.3 m <sup>2</sup>	134.67 / 152,267.05	35,434,833	220-4	사 무 실
				302.46 / "	79,822,784	-5	"
			계 15,422.8m <sup>2</sup>	306.89 / "	80,991,913	-6	"
				302.46 / "	79,822,784	-7	"
			계	1,962.80 / "	513,269,230	계	
				325.13 / "	85,805,666	101-3	근린공공 시 설
				338.11 / "	89,231,242	101-1	"
				21,800.227 / 219,308.47	5,708,304,536		
				21,536.077 / 152,267.05	5,624,820,318		
				264.15 / 67,041.42	83,484,218		

시			실			계			청 산 금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추산액	추산액	지 수	정 수		교 부				
						지 수	금 액	지 수	금액			
65.43	69.24	134.67	51,065,180	86,500,013	2,317,798							
146.93	155.53	302.46	119,837,304	199,660,088	5,287,909							
149.10	157.79	306.89	121,616,950	202,608,863	5,356,006							
146.93	155.53	302.46	119,837,304	199,660,088	5,287,909							
963.52	1,009.28	1,962.80	740,905,329	1,254,174,559	34,446,534							
232.93	93.10	325.13	195,173,771	280,979,437	7,441,616	17,226	650,417					
241.29	96.82	338.11	244,820,728	334,051,970	8,847,218	16,221	612,470					
10,86.589	1613.638	21,800.227	12754,637,091	18462,941,627	507,676,425	7,473,324	282,176,666					
10,087.869	1448.208	21,536.077	12642,964,224	18267,784,542	503,343,274	7,473,324	282,176,666					
98.72	165.43	264.15	111,672,867	196,157,085	4,333,151							

◎서울특별시고시제 74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1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신서울건설 (주) 조인구
3. 사업시행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도봉구쌍문동산 289-1 의 2 필지  
 나. 면적 : 9,482 ㎡  
 다. 규모 : 연립, 3층, 6동, 114 가구
4. 사업시행기간 : '85.9-'85.12.
5.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소로	2	1	8미터	95미터	쌍문동산291-2	방학동산87-2	폐지
신설	"	2	2	8 "	90 "	방학동산87-2	"	신설

◎서울특별시고시제 74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우리시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2에 의거 다

○ 시설조서

- 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11.1.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폭 (m)	길이 (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	1,328	방화동289의1	방화동500의2	일부구간 (L=90 m) 위치변경
변경	"	3	6	1,328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b>◎서울특별시고시제 747 호</b></p> <p>도시계획시설 (하천) 결정</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하천) 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 및 동 법시행령 제 6조 1항 1호나목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 12조</p> <p>○ 시설조서</p>	<p>4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5.11. 1. 서울특별시 장</p>
------------------------------------------------------------------------------------------------------------------------------------------------------------	-----------------------------------------------------------------------------------------------------------------------------------------------------------------------

구분	시설명	위 치	폭원 (m)	연장 (m)	비 고
신설	하 천	강남구내곡동 1의344 - 탄천합류점	7-42	4,85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b>◎서울특별시고시제 748 호</b></p> <p>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결정고시</p> <p>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6조 제 1항에 의거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p> <p>○ 변경결정조서</p>	<p>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5.11. 1. 서울특별시 장</p>
--------------------------------------------------------------------------------------------------------------------------------------------------------------	------------------------------------------------------------------------------------------------------------------------------------------------------------------------------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	비 고
기정	시 장	중구명동 1가 53-1 의 4 필지	1,015	폐 지
변경	"	"	0	
기정	"	강남구방배동 980-4	1,648.9	폐 지
변경	"	"	0	
기정	"	영등포구당산동 5가 11-1 일대	5,247	
변경	"	"	2,010	

\* 변경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49호

다동제 12 지구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91호('83.9.23)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다동제 12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58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동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11.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명칭 : 다동제 12 지구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중구다동 92 번지의 14 필지

다. 시행년척 : 1,995.4 ㎡

라. 시행자의 주소, 성명

1)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다동 92 번지

2) 성명 : 김 병 오

마. 사업시행기간 :

'83.9.23-'86.3.20

바.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1) 대 지 : 1,396.88 ㎡

2) 건축시설 : 10,139.53 ㎡

가) 층수 : 지상 12층, 지하 4층

나) 용도 : 사무실 및 판매시설

사. 분양설계

1) 토 지  
시행구역내 토지 15 필지  
1,995.4 ㎡중 계획 공공용지  
598.6 ㎡를 제외한 1,396.8 ㎡  
를 확정 측량을 거쳐 1 필지  
로 지적 정리하여 건축물의 분  
양면적에 비례하게 공유지분으

로 분양한다.

2) 건 물

가) 사업시행으로 신축된 건축물

10,139.53 ㎡중 분양신청자인

이재식에계토지투여분비인 6

비부분포함비 17.347%인 6

층 747,795 ㎡와 7층 747,795 ㎡

과 11층에서 131,659 ㎡(공

유포함) 12층에서 131,659 ㎡

(공유포함) 12층에서 131,659

㎡(공유포함)를 분양한다. 시행

자의 건축물은 분양지 및 시행

나) 사업시행전의 건축물에 대해

서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하지 아니한다.

다) 단수처 리

토지, 건물 공히 ㎡를 쓰며,

토지는 소숫점이하 둘째 자리에

건물은 소숫점이하 셋째 자리에

서 사사오입한다.

라) 청 산

사업완료후 법 5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청산한다.

아. 분양대상자의 주소, 성명 : 별 첨

(생략)

자.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물시설의 추산액과 종건

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

격 : 별첨 1

차. 분양대상자의 종건의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

리명세 (생략)

카.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건의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대한 청산방법 : 별첨 2

타. 법제 43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격 및 처분방

법 : 별첨 (생략)

파.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

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별첨 (생략)

하. 참여조합원이 취득하게될 대지와

건축시설의 명세 및 참여조합원의 주

소, 성명 : 해당사항 없음.



별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주산액과 총전의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분양 대상자	총전의토지건축물의 명세와가격					분양예정의대지또는건축시설의주산액						
	지번	면적 (㎡)		평가액			지번	면적 (㎡)		주산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계
김병오	중구다동											
	S2	131.9	664.02	395,700,000	85,666,320	157,366,320	중구다동	1,154.838	8,380.622	3,464,514,000	9,206,942,900	12,671,456,900
	93	107.1		321,300,000								
	93-2	74.7	380.42	224,100,000	56,872,790	280,972,790						
	94	267.8	235	696,280,000	30,432,500	696,280,000						
	95	66.1		198,300,000								
	96	598.3	1,115.57	1,974,390,000	100,959,085	2,075,349,085						
	98-3	64.5		116,100,000		116,100,000						
	98-4	8.1		14,580,000		14,580,000						
	51-5	149.8	69.42	304,094,000	3,262,740	307,357,740						
소계	1,468.3	2,395.01	4,244,844,000	277,193,435								
이재식	92-4	171.2	683.47	433,992,000	92,951,920	555,335,920	중구다동	241.962	1,758.908	495,288,000	1,194,687,000	1,689,975,000
	99-4	11.2		28,392,000								
	99	220.4	231.4	547,694,000	23,140,000	570,834,000						
	92-8	11.2		27,832,000								
	소계	414	914.87	1,037,910,000	116,091,920							
110.9층 41.05 (청산대상) (형산대상)	98-5	110.9		199,620,000		199,620,000						
	98-1	2.2		3,960,000		3,960,000						
합계		1,995.4	3,379.3	5,486,334,000	393,285,355	4,872,227,355	합계	1,396.8	10,139.53	3,959,802,000	10,401,629,900	14,361,431,900

(별첨 2) .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시설의 명세와 이에 대한청산방법  
 가)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시설의 명세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종전의토지및건축물의평가액					비고	
		지번	면적		평가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강남구반포동 264-6	윤명애 외 3인	중구다동 98-1	2.2			3,960,000	3,960,000	
		중구다동 98-5 (110.9㎡중) 12분지4.52	41.05			73,890,000	73,890,000	
계			43.25			77,850,000	77,850,000	

나) 청산방법 :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울시 가격 평가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청산 대상자가 청산금을  
 수령치 않을시는 법제 54 조 2 항에서  
 공략하므로써 청산에 가름한다.  
 ※ 단 수용의 경우에는 제외함.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655 호

은평구진관내외동정비공사 ( 도로 ) 실시  
 계획 공 략 공 고

1. 서울시고시제 283 호 (85.4.27) 로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및 고시  
 제 353 호 (85.5.29) 로 지적승인된  
 은평구 진관내 외동 도시계획사업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을 우  
 선 시행하고자 도시계획 제 25 조  
 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이해 관계인에  
 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미수령  
 자에 한하여서는 이 공고로 갈  
 음한다.

1985.11.1

서울특별시장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략 개 요</p> <p>가. 사업시행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평구진관외동 256 의 3-353 의 2</li> <li>○ 은평구진관내동 542 의 4-533 의 20</li> </ul>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도로)</p> <p>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  <math>B = 8m</math> <math>L = 997</math> <math>A = 79</math> ㉔                  (하수암거 980 m)</p> <p>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p>	<p style="text-align: center;">(은평구청장)</p> <p>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인가즉시                  ('85.11. . - '86.11.30)</p> <p>바.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p> <p>아. 기타사항 : 의견 및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토목과에 제출문의 하시기 바람이며 공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한다</p>
<p>진 관 내 외 동 정 비 공 사 토 지 조 서 (1)</p>	

소 재 지	분할전토지			분할후(수용대상)토지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은평구진관외동	256-3	도	99	256-5	도	7	은평구구과발동 5-6	최 종 열
	242-17	"	169	242-19	대	6	" 용암동 92-2	김준수의1
	296-18	"	139	296-23	"	4	서대문구창천동 52-3	김 충 연
	296-17	"	99	296-22	"	8	은평구진관외동 296-17	김 진 환
	296-16	"	136	296-21	"	13	종로구무악동 22 호	임 영 대
	296-1	전	1,891	296-20	전	62	은평구불광동 264-2	이 운 기
	302-1	답	2,761	302-11	답	30	종로구충신동 175-18	리광수의1
	303	전	218	303-1	전	81	은평구진관외동 303	정 업 심
	341	답	539	341-1	답	20	종로구운니동	고 익 환
	344	대	965	344-1	대	78	은평구녹번동 160-14	심 군 택
	345-2	도	43	345-4	도	10	"	"
	345-1	답	340	345-3	답	127	"	"
	346	대	1,134	346-1	대	43	종로구명동 222	재단법인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
	330-3	대	53	330-4	대	4	은평구진관외동 330-3	정 봉 근
	353-3	답	136	353-3	답	79	종로구심문로 1 가 195	이 민 기
	302-6	천	12,843					서울특별시
317-4	천	55,360					"	

진관내외동정비공사토지조서(2)

소재지	분할전토지			분할후(수용대상)토지			소유자주소성명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관계인주소성명	
은평구 구과발동	2-1	전	555	2-3	전	6	진관내동 5-12	김형기
	1-1	답	168	1-6	답	1	"	"
	3-1	전	159	3-6	전	94	은평구구과발동 18	이옥성
	4-5	대	80	4-46	대	3	" 4-5	차인철
	4-6	"	178	4-47	"	21	" 4	양세진
	4-7	"	86	4-48	"	2	" 4-7	이상원
	"	"	86	4-49	"	3	"	"
	4-2	"	314	4-50	"	3	" 4-2	천종복
	4-43	전	2,737					서울특별시
	530-7	"	3,412					"

사 령

◎ 1985년 11월 1일

령제 408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도희	경찰국 파견 ( '85.11. 1. - '86. 1. 31 )	운수 2 과	지방기계기사

서울특별시장